

『부자씨 적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5.09.01기준, 세전)

구 분	내 용	
상품특징	하나원큐 로그인 횟수 & 하나 합 서비스 등록에 따라 우대금리 Up~ 적금을 모아서 예금으로~! 예금이 모여서 목돈으로~!	
상품유형	적립식예금	
적립한도	매월 1원 이상~50만원 이하(원단위, 자유적립식)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(1인 1계좌)	
계약기간	1년	
기본금리	연 2.30% (※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)	
우대금리	최대 연 2.00% (※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) ① 하나원큐 로그인 실적 : 최대 연 1.20% ② 하나 합서비스 등록 & 기관연결 : 연 0.60% ③ 마케팅동의 : 연 0.10% ④ 하나원큐 Push알림 동의 : 연 0.10%	
재예치	○	만기전일까지 재예치 신청 가능
일부해지	○	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 범위내 만기일 이전 2회 가능(종도해지금리 적용)
세제혜택	○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
예금담보대출	○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	
증도해지금리	기간	증도해지금리	
	1개월 미만	연 0.10%	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	
	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 (단위: 연, %)	
(주1) 차등율 : 기간(6개월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			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경과시		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경과시	11개월 이상 경과시
60% 적용		70% 적용	90% 적용
(주2) 경과율 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증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(예시) 증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			
만기 후 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2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4 		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『부자씨 적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『부자씨 적금』
- 상품특징 : 하나원큐 로그인 횟수 & 하나 합 서비스 등록에 따라 우대금리 Up~
적금을 모아서 예금으로~! 예금이 모여서 목돈으로~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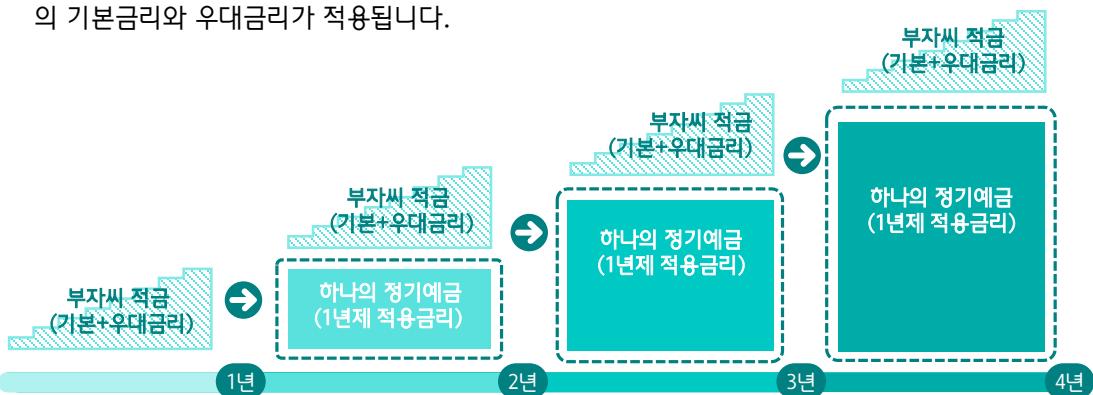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5.09.01기준, 세전)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(1인 1계좌)		
거래방법	• 신규 :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	•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	
계약기간	1년	예금종류	자유적립식
이자지급방법	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해지시 이자를 지급		
가입 및 적립한도	매월 1원이상~50만원이하(원단위)		
기본금리	연 2.30% (※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)		
우대금리 (최대 연 2.00%)	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 2.00%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. (단, 중도해지시 미적용)		
	우대항목	내 용	
	하나원큐 로그인 (최대 연 1.20%)	이 예금 가입일(재예치일)로부터 만기전일까지 매월1회 이상 하나원큐 로그인을 한 경우, 로그인 해당 월마다 연 0.1% 적용 후 합산하여 제공 [예시] 계약기간 중 하나원큐 로그인을 3월, 7월, 8월, 10월, 11월, 12월만 한 경우 ▶▶▶▶▶▶ 우대금리 연 0.6% 적용	
	『하나 합 서비스』 가입 및 기관 연결 (연 0.60%)	이 예금 가입일(재예치일)기준 익월말까지 『하나 합 서비스』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 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	
	마케팅 동의 (연 0.1%)	이 예금 가입(또는 재예치)전 하나은행 상품,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	
	하나원큐 Push 알림동의 (연 0.1%)	이 예금 가입(또는 재예치)전 하나원큐 마케팅Push알림을 동의한 경우	
※ 신규가입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, 쿠폰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 (단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 미적용)			

-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예치방식은 (세후)원리금 방식입니다.
- 기동록된 자동이체는 재예치 기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.
-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(단,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은 재예치시일의 '하나의 정기예금' 1년제 적용금리가,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시일의 '부자씨 적금'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

※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
-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
-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
- 판매중단 등. 단, 판매중단일이후 만기 도래한 계좌에 한함

※ '하나의 정기예금'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,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에 고시합니다.

적립금은 입금일로부터, 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은 재예치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.(원미만 절사)

기간	중도해지금리
1개월 미만	연 0.10%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
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 (단위: 연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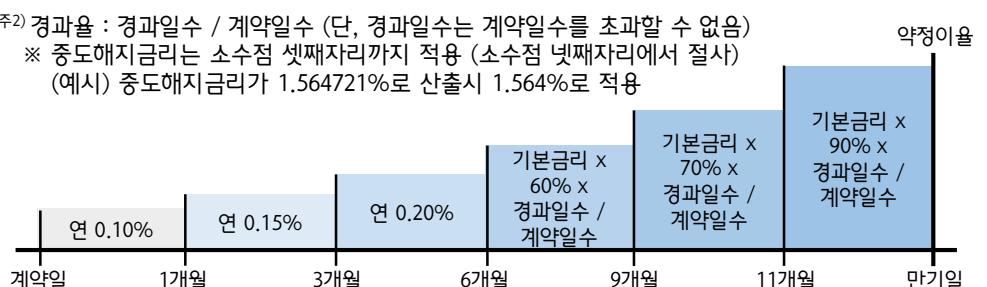
(주1) 차등율 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
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경과시	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경과시	11개월 이상 경과시
60% 적용	70% 적용	90%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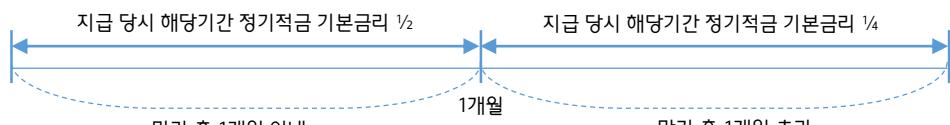
(주2) 경과율 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

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

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



- 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2
-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/4



※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.

- 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에 한해 만기일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,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계약기간 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합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만기전일]</p> <pre> graph LR A["[1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"] -- "+" --> B["[2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"] B -- "+" --> C["[3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"] C --- D["⋮"] </pr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은 재예치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예치일의 ‘하나의 정기예금_1년제 적용금리’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만기앞당김지급	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만기 앞당김 지급 불가합니다.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일부해지 포함)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
세제혜택	<p>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.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</p>
담보제공	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능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.
양도·명의변경	불가합니다.
자동이체	<p>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. ※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</p>
연계·제휴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,1)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금자보호여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0070C0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</div>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
-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(단,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재예치 하며, 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은 재예치일의 ‘하나의 정기예금’ 1년제 적용금리가,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‘부자씨 적금’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(※‘하나의 정기예금_1년제’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에 고시합니다.)
- 일부해지는 재예치된 (세후)원리금에 한해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,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계약기간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록 :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